[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0.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발급·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내용	발급 수량　　갑부 [　　]부　　을부 [　　]부	
	열람 부분　　갑부 [　　]　　을부 [　　]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립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